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 89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시장이 냉난방 온도 관리 건축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 결과 공개,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 부과

2. 주요내용

-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 지정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0조)
- 대상 건축물의 온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1조)
- 대상 건축물의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2조)
- 대상 건축물의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
-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표시 권고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0. 1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u> <u>제20조(대상 건축물)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u>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u> <u>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u> <u>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u> <u>② 대상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적용예외” 구역은 냉난방 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u> <u>제21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 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22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3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에너지 사용량 표시)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